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유치원에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나, 유치원 현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긴급 개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법 변경(수업일수 조정, 휴업일 지정)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법률 근거 조문에 관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주요내용

- 가. 매 학년도 개시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원장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된 수업일수는 제1항 본문의 기준(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따라야 함(안 제12조제2항).
- 나. 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음(안 제14조제2항).

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19조의3 제5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는 등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체계 자구 수정을 통해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2조의4제1항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임시공휴일(이하 “임시공휴일”이라 한다)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수업일수는 제1항 본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3제1항”을 “법 제19조의3”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일”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이 지정

되어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중 “법 제19조의3제5항”을 “법 제19조의3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생략)	제12조(수업일수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임시공휴일(이하 “임시공 휴일”이라 한다) 지정으로 수업 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업일수는 제1항 본문의 기 준을 따라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휴업일 등)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휴업일 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 기 전에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u>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유치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u>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 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	제14조(휴업일 등) ① ----- ----- ----- ----- 법 제19조의3----- ---- 운영위원회----- ----- ----- ----- -----

다.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정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
운영위원회-----

-----.

⑤ ---- 제4항-----

-----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일---
-----.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운영위원회 -

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u>법 제19조의3제5항</u>에 따라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생략)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 ----- <u>법 제19조의3제7항</u>----- -----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7162